

■ 법률 칼럼

시민권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밀입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하거나 또는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를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밀입국한 사람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해 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권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아의 응급 상황과 치료 방법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아의 응급 상황과 그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치아의 응급 상황인지는 명확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치아에 난 작은 상처도 치아 내부의 살아있는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치아는 물론이고, 때운 필링(filling)이나 크라운(crown)이 빠졌을 때에도 이로 인해 치아 내부의 조직에 영향을 주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 트라우마는 대개 사고나 너무 단단한 음식을 씹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그 형태로는 깨지거나 부러지고 심지어는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가 빠졌다면, 치관 쪽을 잡고 뿌리는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물에 린스를 하되 뿌리에 붙어 있는 조직들은 닦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진 치아의 잇몸 안에 다시 조심스럽게 집어 넣거나, 우유 안에 넣어서 필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치과 내원해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진 경우엔, 따뜻한 물로 닦고 얼음팩을 다친 부위에 대 붓기를 최소화 시키며 치과에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는 사고나 트라우마 외에, 오래된 큰아말감 필링 주위의 치아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 크기가 작을 시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도 항상 있지 않고 음식을 씹을 때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보이기에 멀쩡하지만 음식을 씹을 때 아프거나,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다면(그 예로 찬물이나 더운물에 시리는 것), 치아 안쪽의 신경조직이 트라우마로 인해 다치거나 자극을 받는 것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

에 내원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로는 치아의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먼저 minor crack(경미한 치아 균열)은 crazy line이라고도 불리고 대개는 치아 겉 표면인 에나멜에만 균열이 국한되어 있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cracked tooth(치아 균열)입니다. 씹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신경조직까지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크라운을 씌워 균열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하거나, 신경이 다친 상태면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치아 균열 외에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그 사이즈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작게 깨진 경우는 필링으로 그 부위를 때우거나, 가볍게 polish해서 거친 표면만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아의 뾰족한 부위(cusp)가 깨진 경우는, 대개 신경조직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저작능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깨진 부위만 복원시키는 onlay(온레이)나 크라운을 씌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split tooth(반으로 갈라진 이)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로로 치아가 갈라져서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발치를 하게 되지만, 만약 어금니에 발생 시엔 뿌리가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갈라진 부위만 제거하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으로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만약 균열이 뿌리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뻗치는 경우(vertical split root)는 뿌리 주위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씹을 시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치아를 살리기가 힘들어 발치를 하게 됩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